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1. 26(화) 10:00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52호
- 나. 제 출 자 : 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 11. 15.
- 라. 회부일자 : 2019. 11. 15.

2. 제안이유

현재 조례상 위원장의 의결 권한이 비민주적으로 되어있는 부적절한 조문을 삭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위원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 원칙이나, 현행 조문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 삭제(안 제6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2019. 10 . . ~ 2019. 10 . .(20일 이상)

5. 검토의견

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위원장의 의결 권한이 비민주적으로 되어 있는 부적절한 조문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나.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과반수에 의한 표결방법은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조문 중 “과반수”는 “반이 넘는 이상의 수”를 뜻하고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개정하여 중복된 의미를 삭제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며, 같은 조항에서의 조문 내용 중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가부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었음.
그러나 가부동수이면 이미 과반수가 아니어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일반적 해석이기에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부적절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해당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4조(시·군·구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④.(생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